

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6. 21(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6. 4.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6. 4.
- 라. 상정일자 : 2010. 6. 15.(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자치행정국장 김진택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(안 별표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개정 조례안은

-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0310호, 2007.10. 4)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- 개별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

- 관련 상위법이 개정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향후에는 상위 법령개정시 관련조례의 조속한 정비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김소림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- 2007. 4월 시행령 개정후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는?
-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함.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소림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4명)

7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 구분란 중 <인가·허가·신고·신청·등록·지정·확인 등>
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준	요액
8. 일반행정관계		
(1)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		
(가) 신규	1건	5,000원
(나) 연장	1건	3,000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【별표3】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			【별표3】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		
구 분	기 준	요 액	구 분	기 준	요 액
<인가·허가·신고·신청· 등록·지정·확인 등>			<인가·허가·신고·신청· 등록·지정·확인 등>		
8. <신설>			8. 일반행정관계		
(1) <신설>			(1) 공유재산의 대부신청		
(가) <신설>			(가) 신규	1건	5,000원
(나) <신설>			(나) 연장	1건	3,000원